

# 계좌 자동납부 이용약관(본부 ↔ 고객)

<p><b>제1조(약관의 적용)</b> 지로 계좌자동납부(이하 자동납부라 한다)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수도사업소(이하 본부) 간의 자동납부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p> <p><b>제2조(영업일)</b>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p> <p><b>제3조(출금)</b>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 계좌에서 본부가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합니다. 다만,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 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납부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 할 수 있습니다.</p> <p><b>제4조(과실 책임)</b> 자동납부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본부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p> <p><b>제5조(전액출금 제한)</b> 본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전액 출금 할 수 없으며, 예금잔액 중 일부 금액이 어음, 수표 등 타점권 부도 발생시에도 전액 출금 할 수 없습니다.</p> <p><b>제6조(출금 우선 순위)</b>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b>제7조(최초 개시일)</b> 자동납부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본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본부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p> <p><b>제8조(신청서 제출 기한)</b> 자동납부 신청은 마지막 영업일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당월 납기에 적용됩니다.</p> <p><b>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b>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본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본부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p> <p><b>제10조(정보제공)</b> 자동납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납부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됩니다.</p> <p><b>제11조(본부의 자동납부 임의 해지)</b> 자동납부 지정계좌의 잔고부족 등으로 연속해서 3회 이상 자동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자동납부가 해지됩니다.</p> <p><b>제12조(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b> 자동납부 신청서를 방문 본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p>
--	--